

인증서비스 발급차단 해제/효력회복 신청서 [개인용 미성년자 인증서]

* 반드시 빈칸 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인증서 신청 정보

성 명	*	생년월일	*
전화번호	*	휴대폰번호	*
이 메 일	*		
신청 내용	*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차단 해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효력회복		

한국전자인증(주)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신청인 성 명 _____

(자필서명)

② 법정대리인 동의서

성 명	*	생년월일	*
전화번호	*	휴대폰번호	*
관 계	*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
법정 대리인 본인은 상기 신청인의 인증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법정대리인 성 명 _____

(자필서명)

③ 대면확인란 (신청자 본인 작성)

고객 기입란 - 필수기입			한국전자인증 기입란
방문일	서류제출자 성명	자필 서명	대면확인자 성명
*	*	*	*

④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절차

인증서 구비서류	서비스 적용절차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증서비스 발급차단 해제/효력회복 신청서 2. 법정대리인, 신청인의 식별 가능한 신분증 앞면 사본 1 부(원본지참) 3.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부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비서류 준비 2. 한국전자인증 또는 서류접수처(등록대행기관)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. 서비스 적용 완료

본 사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0 케이타워서초 7층 (1층 하나은행 건물)

전 화 : (전국)1566-0566 FAX : (02)2055-2761 www.crosscert.com



한국전자인증 확인 :

등록번호 :

■ 한국전자인증(주) 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관련법" 이라 한다)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(이하 "한국전자인증"이라 한다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한국전자인증의 인증업무준칙(이하 "인증업무준칙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전자서명관련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한다.
- "전자서명생성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전자서명검증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인증"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"인증서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"등록대행기관"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/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자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
- "가입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.
- "이용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.
- "가입자 정보"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/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/문자/음성/음향/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"단말기 지정"이라 함은 단말기(PC, 스마트폰 등)의 기기정보(IP, MAC, HDD Serial 등)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,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"추가인증"이라 함은 휴대폰 SMS 인증, 다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"다채널 인증"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.

제 3 조 (약관 명시 및 개정)

- 본 약관은 인증서비스 가입 신청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전에 이를 고지한다.
-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본 약관의 공지는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(<http://www.crosscert.com>)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약관 변경의 고지는 전단과 동일한 방법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약관 외의 규정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령 및 한국전자인증의 인증업무 준칙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

제 5 조 (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)

-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갱신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.
-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, 인증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- 제 5 조 2 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.

제 6 조 (인증서비스 가입신청)

-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전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,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 -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
 -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 -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- 기타 가입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
- 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. 다만,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인증서의 발급절차)

- 가입신청과 신원확인이 끝난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.
-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. 다만, 가입신청 후 전조 제 2 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, 가입신청자가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
-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.
- 7 조 3 항의 경우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.

제 8 조 (인증수수료의 환불)

-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20 일 이내,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,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

제 9 조 (인증서의 유효기간)

-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
제 10 조 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

-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.
 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 - 본 약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 - 본 약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
제 11 조 (인증서의 효력정지 등)

-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,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.
-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.
- 한국전자인증은 제 1 항,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://dir.crosscert.com 에 이를 공지한다.

제 12 조 (인증서의 폐지 등)

-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.
 -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 -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
 - 가입자의 사망/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

